

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'95. 8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## 2. 개정근거

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, 제3항, 제4항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(조례 제4조)
- 나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.
  - 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
  - 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
- 다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㎡에서 700㎡로 확대 (조례 제39조의2)
- 라.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(조례 제39조의3)
- 마.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(제56조) : 1급관사에 한함 → 1,2급 관사에 한함.
  - . 보일러 운영비
  - .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
  - . 전기요금, 수도요금,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

#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37조 제1항중 "시장·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"를 "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"로 하며 "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"을 "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을"로 하고 "변경계획을 작성하여"를 "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까지"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"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

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2 제1호중 "기타지역에서는 400㎡이하의 토지"를 기타지역에서는 700㎡이하의 토지"로 한다.

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 3 (공유재산매각승인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3. 3급관사: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

제56조 제3호 및 제4호, 제5호, 제7호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일러 운영비(단, 1급 .2급관사에 한함)

4.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(단, 1급 .2급관사에 한함)

5. 전기요금(단, 1급 .2급관사에 한함)

7. 수도요금(단, 1급 .2급관사에 한함)

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(단, 1급 .2급 관사에 한함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4조(중요재산)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(구가 있는 일반시는 5억원이상, 기타 시 . 군은 2억5천만원 이상)</li> <li>2.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(구가 있는 일반시는 1만제곱미터이상, 기타 시 . 군은 5천제곱미터 이상)</li> </ol> <p>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.</p> <p>③중요재산의 한계 기준으로서 1건이하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</li> <li>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</li> </ol>	<p>제4조 (삭제)</p>



현행	개정 (안)
<p><u>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·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, 지목,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</p> <p><u>( 신 설 )</u></p>	<p>③ (삭제)</p> <p>④ ----- -----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37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39조의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) 영 제95조의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(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㎡이하, 시지역에는 300㎡이하, 기타 지역에서는 400㎡이하의 토지)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</p> <p>2. ~ 3. ( 생략 )</p> <p>( 신 설 )</p>	<p>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39조의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)</p> <p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기타 지역에서는 700㎡이하의 토지 ----- -----</p> <p>2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39조의3(공유재산 매각승인)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




# 검 토 보 고 서

## □ 조 례 명

-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□ 주 요 내 용

1. 중요재산의 범위 (안 제4조)
  - 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
    - 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
    - 토지의 경우 5천 제곱미터이상 등
2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 (안 제37조의 2)
  - 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(도로, 하천 등)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,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통보
3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 확대 (안 제39조의 2)
  - 현 행 : 기타지역 400㎡ 이하 토지
  - 개 정 : 기타지역 700㎡ 이하 토지
4.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 승인규정 신설 (안 제39조의 3)
5. 관사운영비 부담 재조정 (안 제56조)
  - 전기,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 예산 지원
    - 현 행 : 1급 관사
    - 개 정 : 1급, 2급 관사

□ 개정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'95. 5.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□ 검토결과 (의견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의 준칙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,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화순군수

나. 제출일자 : '95. 8. 31

다. 회부일자 : '95. 9. 13

라. 상정일자 : 

┌	1차 상정 :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95. 9. 18)
	재상정 :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95. 10. 30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수철

나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시행령이 '95. 5.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다. 주요골자

○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 (한 제4조)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 중요재산 범위 삭제

○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 확대

- 기타지역 400㎡ 이하 토지 → 700㎡ 이하 토지 (안 제39조의 2)

○ 관사운영비 부담재조정 (안 제56조)

- 전기,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인경우 공동관리 예산지원  
1급 관사 → 1, 2급 관사

## 3.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 개정(안)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의준칙에 의해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4. 질 의 답 변 요 지

생 략

5. 토 론 요 지

생 략

6. 심 사 경 과

원 안 가 결

7. 첨 부

가.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 대비표